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시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 **523**

제출연월일 : 2009. 8. 17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자동차관리법」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법령에 규정된 자동차매매업자의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나. 자동차폐차업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자동차관리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신・구조문 대비표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 • 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2009. 5. 15. ~ 6. 4.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「자동차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"을 "「자동차관리법」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,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외의 부분중 "법"을 각각 "「자동차관리법」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의 제목 "(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)"을 "(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)"으로 한다.

제7조 각 호외의 부분 및 별표 2의 제목중 "자동차폐차업"을 각각 "자동차해체재활용업"으로 한다.

별표 1 주 제6호중 "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"를 "「폐기물관리법」 제18조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자동차 폐차업과 관련된 부분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•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(이하 "법"이라 한 규정에서 정한 자동 기준에 관하여 필요 을 목적으로 한다.	다) 제53조제 3항의 차관리사업의 등록	제1조(목적) 		「자동차관리법」
제4조(자동차매매업의 53조제3항의 규정에 (이하 "매매업"이라 한다)을 확보할 전다. 1. ~ 2. (생략) 3. 자동차의 매매 또 런하여 매매업자가 인에게 변상하여야 경우 그 지급을 보충만원 이상의 보증금(이라 한다)을 확보할 ② (생략)	의한 자동차매매업 한다)의 등록기준은 는 매매알선과 관 매도인 또는 매수 할 손해가 발생할 증하기 위하여 천	동차관리법」 1. ~ 2. (현호	 행과 같음	등록기준) ① <u>「자</u>
제5조(하자보증금의 예항제3호의 규정에 의금융기관에 예치하거입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는 보증보험은 매매역나 폐업한 경우를 기의 환급이나 보험계약기계 없으며, 보험계약기계는 재가입하여야 한 ③제1항의 규정에 의배상을 한 때에는 배내에 그 금액을 충당	의한 하자보증금은 나 보증보험에 가 한 하자보증금 또 업등록이 취소되거 에외하고는 예치금 약의 해약을 할 수 간이 만료된 때에 다. 한 하자보증금으로 상일 부터 '윌 이	<삭제> -		

현	행	개	정	안
제6조(자동차정비업의 제53조제3항의 규정이 비업의 등록기준은 다 1. ~ 2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에 의한 자동차정 가음 각호와 같다 등록기준) 법 제	동차관리법」 1. ~ 2. (현호 ② ~ ④ (현 제7조(자동차해	행과 같음) 행과 같음 체재활용입)]의 등록기준)
53조제3항의 규정에 업의 등록기준은 다- 1. ~ 3. (생략) [별표 1]	. – – – – – – – – – – – – – – – – – – –	<u>「자동차관리체재활용업</u> 1. ~ 3. (현학 [별표 1]		
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(6. 부동액회수재생기에서 발생하는 폐부 관리법」 제25조의 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것으로 본다.	는 당해 사업장 ·동액을 <u>「폐기물</u> 규정에 의하여 위	6		,
[별표 2] <u>자동차폐차업</u> 시설기준 7조 관련)	: 및 작업기준 세	[별표 2] 자동차해체재활 기준(제7조 3		!기준 및 작업

관계 법령

∦ 자동차관리법
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자동차"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(이하 "피견인자동차"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- 2. "운행"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(용법)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자동차사용자"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.
- 4. "형식"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,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.
- 5. "폐차"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·파쇄(파쇄)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·파쇄하는 것을 말한다.
- 6. "자동차관리사업"이란 자동차매매업·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.
- 7. "자동차매매업"이란 자동차[신조차(신조차)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]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(업)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- 8. "자동차정비업"이란 자동차(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)의 점검작업, 정비작업 또는 구조· 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한다
- 9. "자동차해체재활용업"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(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)의 인수(인수),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,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 [전문개정 2009.2.6] [시행 2010.2.7]

제53조 (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등) ①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1999.4.15, 2008.2.29, 2008.3.28>
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.
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1999.4.15>
- ④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·환경오염·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 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58조의3 (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) 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의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58조제1항 각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<개정2008.3.28>

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08.3.28>

- ③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. <신설 2008.3.28>
-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의 알선이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. <신설 2008.3.28>
- 1. 보장금액
- 2. 보증보험회사,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
- 3. 보장기간

∦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
제13조의2(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)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(이하 "자동차매매업자"라 한다)는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.

- 1. 법인인 경우: 2천만원 이상
- 2. 법인이 아닌 경우: 1천만원 이상
-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조치(이하 이 조에서 "보증"이라 한다)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자동차매매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 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⑤ 자동차매수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·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수인과 자동차매매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에 한한다)·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.
- ⑥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09.3.27]

∦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
제111조 (등록신청등)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 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부등본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을 확인하여야 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12.31, 2001.4.19, 2003.1.2, 2004.11.29, 2005.9.16, 2006.8.7>

- 1. 삭제 <2003.1.2>
- 2. 사업장(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영업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. 다만,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

-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.
- 3.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
- 4.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(자동차매매업을 제외한다)
- 5. 삭제 <2006.8.7>
- 6. 사업계획서(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)
- ②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내용이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등이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12.31>
- 1.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- 2.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(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)
- 3.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.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(이하 "정비요원"이라 한다)의 자격증 사본 및 취업승낙서(자동차정비업인 경우에 한한다)
- 5.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월이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.<개정 1999.12.31>
- 1.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붙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
- 2.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
- 3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인가·허가·심의등이 지연되는 경우
- ④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12.31>
- ⑤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(이하 "등록사항"이라 한다)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12.31>
- 1. 상호 또는 명칭
- 2.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·주소
- 3. 사업장의 소재지
- 4.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
- 5. 기계·기구명세(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한한다)
- ⑥ 제5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07.12.13>